

제5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6. 4. 22.(금) 15:00 ~ 21: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 : 이순일 의장, 김상배 평의원, 구형건 평의원, 김동근 평의원, 이동렬 평의원,
임문채 평의원, 이준석 평의원, 오귀석 평의원, 최중원 평의원
(불참 : 노재성 부의장, 류동관 평의원, 김준형 평의원, 이삼구 평의원)

4. 의안

○ 보고사항

- 공공정책대학원 계약학과 신설 관련 서면결의 결과

○ 심의사항

- 학칙 개정 (안)

○ 사전 검토사항

- 대학원 신산업융합학과 신설(안) 사전 검토

○ 자문사항

- 2015학년도 교비회계 및 병원회계 결산(안)

5. 주요 회의결과

가. 보고사항

- 제56차 대학평의원회(2016.1.21.)에서 공공정책대학원 계약학과 신설(안)이 부결되어 추후 서면결의를 통해 심의 통과함
- 서면결의 일자 : 2016. 1. 27.(수)
- 서면결의 결과 : 평의원 전원 찬성으로 심의 의결

나. 심의사항 - 학칙 개정(안)

-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 다만, 융합시스템공학과 신설 건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2017학년도

<간서명 란>

의장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칙 공포 및 대교협 시스템에 학과 신설 사항을 입력하는 작업을 5월 초까지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원안을 수용함. 이번 의결은 아래 바로 상술된 대학평의원회의 지적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한 보완 대책을 대학본부가 마련할 것이란 기획처장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기록에 분명히 남기는 바임.

○ 융합시스템공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의 학과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과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짐. 학과가 만들어지고 나면 계획된 정원 53명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학은 큰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됨.
- 재직자 전형의 주 대상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졸업생 포함)들을 상대로 선호학과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임.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에는 여학생들의 관심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융합시스템공학과’는 지원자 모집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 원활한 학생모집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과 명칭의 변경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재직자 전형 지원자의 확보 및 입학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근 기업체들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수원 부근의 대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학본부가 이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획처장의 보고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임.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임. 가장 좋은 방안은 재직 중인 기업체에서 학비 지원을 받아 대학을 다니는 것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과 관련해 우려가 큰 것의 하나는 선발된 학생들의 학력 문제임. 학과 신설과 관련한 논의에서 대학평의원들이 강조한 원칙의 하나는 이 학과 졸업생들의 능력이 아주대학의 다른 학과 졸업자들과 비교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 이수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교육 수준이나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로를 밟은 학생들의 학사학위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으로 전혀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공대 학생들과 유사한 정도로 고등학교 수준 영어, 수학, 기초과학 학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려움.
- 수학과 기초과학 과목들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면 전공진입제의 제한에 걸려

<간서명 란>

의장

전공과목 수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학위 취득이 늦어지게 됨. 직장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며,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겪더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됨.

-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과 기초과학 과목들을 낙제하면 계절 학기 재수강을 통해 이수함으로써 다음 학기 전공과목 수강이 가능함. 그러나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강의는 주말 또는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목의 계절학기 개설과 이수가 가능할지 의문임.
-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들을 위한 주말 및 야간 강의 문제는 기초과학실험 과목들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함. 기초과학실험은 통상적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금요일 실험 장치를 교체하며, 동시에 실험조교를 담당하는 대학원생들의 사전 교육/실험이 이루어짐. 따라서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실험이 주말 또는 야간에만 가능하다면, 실험과목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됨.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과목을 담당하는 학과들과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학과 신설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검토되지 못했다는 하나의 징표임.
- 수학 및 기초과학 과목(실험 포함) 관련해서는 자연대 해당 학과들과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며, 다른 기초/교양과목들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산학부대학 및 관련 대학들의 협조를 미리 구해야 함. 또한, 전공과목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산업공학과의 교수 및 학생들이 겪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산업공학과는 학부 융합시스템공학과 신설과 대학원 신산업융합학과 신설이 모두 현실화되면 15과목의 강의를 추가로 개설해야 함.
-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을 정원 외로 모집하려면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가 필요 하지만 산업공학과는 정원 외 모집을 원하지 않아, 학과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청취함. 계획된 정원 53명 중 1명은 입학정원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학생은 학적부 기록이 구별되는지, 또한 정원 내 입학생이 야간 또는 주말 강의만 수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 의문을 가짐. 정원 내 입학 1명은 전과가 허용되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타과 전과가 허용된다면 이는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후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학적이 영향을 받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 재직자 특별전형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과 학사관리 등 교육 전반에 있어 다양한 운영계획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대학 및 학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고, 대학본부의 행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및 관련 학과 신설을 준비할 전담위원회를 대학 차원에서 구성하고 종합적인 활동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을 권고함.

<간서명 란>

의장



-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및 학과 신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치밀한 준비와 함께 외부 기업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학교가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표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의료원 연구기관 명칭 변경(유헬스정보연구소→의료정보연구센터)
-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 융합시스템공학과 신설
- 제11조(의료원) 의료원 연구기관 명칭 변경(유헬스정보연구소 → 의료정보연구센터)
- 제21조(학생정원) 일반대학원 정원 동결, 특수대학원 정원 변경(교통ITS대학원 10명↑, 임상치의학대학원 10명↓), 융합시스템공학과 신설에 따른 정원 반영(산업공학과 1명↓, 융합시스템공학과 1명↑)
- 제23조의 2(계약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정원 조정(20명→30명)
-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건축학전공 졸업이수학점 조정(164학점→158학점)
- 제51조(학사과정의 조기졸업) 건축학전공 조기졸업 불가대상에서 삭제
- 제54조(학사과정의 학위수여) 융합시스템공학과 신설에 따른 학위수여(공학사)

자세한 사항은 2015년 동계 2차 및 2016년 3차 교무회의 회의록 참조

다. 사전 검토사항 - 대학원 신산업융합학과 신설(안) 사전 검토

-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유치와 관련한 대학원 신산업융합학과 신설(안)에 대하여 사업 총괄책임자(산업공학과 정명철 교수)가 설명함
- 학과 신설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며 취지에 동의하기에, 추후 사업 선정 시 (2016년 4월말 발표) 대학원 신산업융합학과 신설(안)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기로 함

라. 자문사항

- 201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1) 보고사항

- 총무처장이 201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설명함

<간서명 란>

의 장

2) 자문사항

- 지난 수 년 동안 교비회계 자금수입은 부속병원전입금을 제외하면 정체 또는 감소 상태인 바, 이는 본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임.
-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학부 등록금 수입은 등록금 동결뿐만 아니라 학생 이탈이라는 심각한 문제 때문으로 보임. 당기 등록금 수입은 2차 추경 후 6.35억 원의 추가 감소를 포함하여 예산대비 총 13.51억 원이 실현되지 않음. 이는 77명의 추가 감소를 포함해 대략 165명의 학생 이탈을 의미함. 신입생 포함 학생들의 이탈 요인 파악을 위한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됨.
- 최근 5년간 특수대학원 등록금 수입은 평균 0.49%의 증가를 보임. 교비회계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운영비용 경감 및 수익 확대 방안 적극적 모색 필요.
- 평생교육원 수강료수입은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어학교육원 수입은 계속 감소. 특수대학원과 달리 공간을 종일 사용하면서 운영수익 창출이 저조한 것은 문제임. 대학 전체의 공간 부족을 고려할 때, 수익 보다는 교육과 연구 수요를 우선시 하는 공간 재배치가 필요함. 또한, 「책임운영부서」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됨.
- 법정부담금 80.76억 원의 23.0%인 18.56억 원을 법인이 전입하지 않아 교비로 충당함. 지난 9년간 법인이 전입하지 않아 교비로 대납한 법정부담금의 누계 162.77억 원은 장례식장 건축비 108.4억 원의 1.5배 규모임.
- 기부금 수입은 의대와 본교를 합해 전년대비 4.33억 원 줄었으며, 특히 본교 분은 2년 연속 감소. 신규 장학프로그램과 연계된 기부금 유치가 많이 홍보된 것과 대조적으로 실제 기부금 총액이 감소한 것은 기존 기부금 유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 필요. 또한 신규 프로그램들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요구됨.
-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기 대비 1억 원 증가. 국고사업 선정 홍보에 비해 실제 국고 지원금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음. 대학본부 노력으로 국고지원금 축소를 막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고사업 선정 여부는 결국 교수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뜻함. 국고보조금 수입의 현상 유지가 정원감축에 의한 등록금 수입의 항구적 감소를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면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임.
- 교비 회계의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부속병원전입금의 합(474.2억 원)과 병원 회계의 고유목적사업전출금 합(445.4억 원)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사업(장례식장, 대아, 대아정보시스템)이 재원인 것으로 추정됨.
- 예산 대비 결산 편차가 큰 항목 발생은 예산 편성 혹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
- 간격이 3달도 안 되는 2차 추경예산과 결산 사이에 나타나는 큰 편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음.
- 국가장학금 I유형은 전년대비 지원자와 수혜자 수가 모두 감소함.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와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도움을

<간서명 란>

의 장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들이 공조할 것을 당부함.

- 의대 관련 항목들이 예산과 결산 사이에 큰 편차를 나타낸 경우가 많음. 이런 편차의 발생 사유에 대해 본교 예·결산 부서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시정이 요구됨. 의대도 아주대학의 일부인 만큼 대학 본부가 의대 예·결산 내역을 다른 단과대와 마찬가지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며, 예·결산 자료도 동일한 수준에서 작성·제출되어야 함.
 - 의대 ‘교원 기초급, 강의료 법정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항목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교원은 지원자가 적거나 자격이 미달하여 충원하지 못하였고, 해외 연수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과의 경우에는 가지 못했기 때문’ 이란 답변이 있었음. 의대와 부속병원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교원 충원 및 해외 연수에 대한 정책의 결정 및 시행은 의대 차원에서 검토·논의되어 의대 교수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함.
 - 직원 인건비 항목의 예·결산 편차는 적절한 수준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량 과중과 업무효율 저하가 우려됨. 특히,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정규직 충원이 바람직(새로운 직군 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
- 소송 관련 지출
- 소송 관련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이며, 현 사립학교법시행령에도 위배될 소지가 큼. 이는 모든 소송의 피고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며, 특히 해임처분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행사한 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임.
 - 소송 관련 지출이 발생하면 부주의 또는 불합리한 의도를 가진 업무처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함.
 - 소송 관련 비용은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만 함.

○ 201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1) 보고사항

- 행정부원장이 201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설명함

2) 자문사항

- 부속병원 회계의 고유목적사업전출금 관련 세부 사항
- 고유목적사업전출금(445.36억)은 법인전출금(56.70억), 의대·간호대전출금(90.73억), 임상교원 인건비(297.93억)으로 구성

<간서명 란>

의장



- 법인전출금은 ‘요양병원 부지 구입에 사용한 법인 자금의 금융비용으로 의료원이 지불하기로 한 자금’ 9.85억 원 포함
- 의대·간호대전출금의 세부 내역은 경상비(운영비) 42.07억 원과 기금적립 48.66 억 원(사회사업기부금 3.11억 원 포함)으로 구분
- ‘새로운 장례식장 운영 후 법인에서 의료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16.94억 원은 법인에서 직접 전입
- 전기와 비슷한 내역과 규모(송재관 관련 비용 + ~5억)인 9.26억 원이 법정부담전 입금에 포함됨
- 부속병원 회계의 고유목적사업전출금에 상응하여 교비회계에 보이는 항목은 임상교 원 인건비 297.93억 원 외에 경상비전입금 23.3억 원(본교 3억원, 의대 20.3억 원)과 법정부담전입금 62.2억 원(본교 28억 원, 의대 34.2억 원)임.
-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대아정보시스템은 부속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매출 액(25억 원) 대비 큰 순이익(6억 원)을 얻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종전 계약자와 비교해 대아정보시스템이 병원에 인력을 더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어느 정도 수익 확보가 필요하고, 대아정보시스템의 수익은 재단의 대학 재정에 대한 기여로 돌아올 것이란 답변이 있었음.
- 법인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주)대아는 부속병원에 대한 매출 규모가 440억 원인데 반해 순이익(4억 원)이 1%도 안 되는 까닭을 묻자, 진료 재료의 이익률은 원래 낮다는 답변이 있었음.
- 전년대비 약품비는 8.6% 늘어난 반면, 진료재료비는 2.3% 증가함. 전체 진료재료비 증가율과 비교해 (주)대아가 공급한 진료재료의 월평균액 증가율이 8.63%로 높은 까닭을 묻자, (주)대아 이외 업체가 공급한 진료재료들은 품목이 다르다는 답변이 있었음. (주)대아와 계약한 진료재료비 440 억 원은 부속병원의 진료재료비 총액 658억 원의 66.8%에 해당.
- (주)대아의 진료재료 공급 월평균액이 8.63% 증가한 반면, (주)대아로부터의 임대료수입은 6.53%만 늘어난 것을 지적.
- 부속병원과 의대는 특수한 관계로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지만, 의대도 아주대학의 단대 중 하나이므로 교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대 특성을 반영한 요소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학 차원의 규정을 따르되, 의사로서 진료를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병원의 독자적 정책 수립과 시행도 가능할 것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으로,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임.

<간서명 란>

의 장

2016. 04. 22.(금)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의장	이순일	(서명)
부의장	노재성	(서명)
평의원	김상배	(서명)
평의원	구형건	(서명)
평의원	김동근	(서명)
평의원	이동렬	(서명)
평의원	임문채	(서명)
평의원	류동관	(서명)
평의원	이준석	(서명)
평의원	오귀석	(서명)
평의원	최중원	(서명) 04/01
평의원	김준형	(서명)
평의원	이삼구	(서명)
간사	김종현	(서명)

<간서명란>

의장